

2022. 1. 27.(목) 학무회의 심의를 거친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충남대학교 총장

2022. 2. 4.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2. 02. 04. 규정 제2043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남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캠퍼스 내의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본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등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도로와 운전자, 사업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전기동력을 사용하며 승차인원이 1인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이동장치를 말한다.
- ②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란 사업자와 운전자 간 청약과 승낙 등의 방법으로 임차(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근거하여 사용권을 득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 ③ “운전자”란 개인형 이동장치(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를 본교 내에서 운전하는 자를 말한다.
- ④ “사업자”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자를 말한다.

제4조(본교의 의무) ① 본교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원활하게 하고,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

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충전시설 등 적절한 교통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부서별 업무) ① 총괄관리부서는 총무과이며, 본교 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운영규정 관리, 등록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업무별 관리부서는 학생과, 시설과이며, 학생과에서는 학생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시설과에서는 주차장과 충전소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하는 교통수단의 안전을 확보하고 본교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등록 및 운행

제7조(등록) ① 본교 구성원 중 개인이 구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운전자는 운행 전 본교 총괄관리부서에 [별지1] 서식을 작성한 후 등록·운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격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③ 사업자는 [별지2] 서식 작성 후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차량교통관리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운행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본교 내 운행 수량을 제한할 수 있고, 승인 받지 않은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제8조(통행) ① 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끝을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가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 보도나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경우와 차량 주차장에서 운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걸어야 한다.

③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속도 제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 통행 속도는 20km/h 이하로 한다.

제10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개인형 이동장치, 자전거, 기타(이하“차량 등”이라고 한다)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차량 등이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차량 등의 운전자에 주의하여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차량 등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그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행자의 보호) ① 운전자는 본교 내 도로에서 운행 시 항상 보행자에게 양보하여 운전하여야 하며 보행자는 통행에 대

한 우선권을 가진다.

②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한다.

③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충전 및 주차

제12조(충전의 장소 및 방법) ① 본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충전할 수 있는 옥외 공간을 제공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옥내에서 충전하는 경우 건물의 소방업무담당자에게 신고 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소방업무담당자는 운전자의 의무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③ 개인형 이동장치의 충전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KC 마크 및 안전확인 신고번호 부착의무)에 한하여 제조사별 충전방법에 따른다.

④ 본교는 고시된 충전단가에 따른 이용료를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⑤ 화재 및 전기 안전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교에 등록되지 않은 개인형 이동장치 및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본교 내에서 충전할 수 없다.

제13조(주차 장소의 제공) ① 본교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를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소화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주차공간의 별도 마련이 어려울 경우 충전소, 자전거 거치장소의 등에 주차 장소를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의 금지)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차로·횡단보도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2미터 이내인 곳
4. 장애인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 또는 장애인의 접근이나 주차를 방해할 수 있는 곳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2미터 이내인 곳
6.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 가.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곳
7. 건물 입구 또는 건물에서 나가는 곳
8. 건축물, 구조물, 녹지공간 위
9. 도로, 보도, 테라스, 주차장, 자전거 전용도로 등 지정구역 이외의 장소
10. 경사로, 계단 또는 연석 등
11. 본교에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차금지 구역으로 지정한 곳

제1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총괄관리부서는 제14조를 위반

하여 주차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운전자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의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개인형 이동장치를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며, 운전자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본교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총괄관리부서는 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등이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⑤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 중 소요된 비용은 운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장 운전자의 의무

제16조(운전 금지사항)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과로, 질병 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2.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3. 개인형 이동장치를 급히 출발시키거나 속도를 급격히 높혀 본교 내 교통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상태

제17조(운전자의 준수사항) ①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캠퍼스 내 교통표지판, 교통 방향 탑승 등 교통 규칙을 준수하여 운행할 것

2. 포트홀, 움푹 패인 곳, 장애물, 공사장, 보행자, 기타 차량 운행 상태 등 주변 환경에 유의하여 운행할 것

3.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세워둔 채 시비·다툼 등의 행위를 하여 다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4. 운전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떠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다른 사람이 함부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운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나.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6. 운전자는 동승자를 태우거나 화물을 싣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

7. 운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드시 헬멧을 착용하고, 기타 개인보호장비(손목보호대, 무릎보호대, 팔꿈치 보호대 등)의 착용도 고려 할 것

8. 양손은 항상 핸들바에 올려놓고 절대 한손으로 운전하지 말 것

9. 그 밖에 교통안전과 교통질서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사항에 따를 것

② 총괄관리부서는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위반사항을 제거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가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운행을 금지 시킬 수 있다.

제5장 안전사고 및 지도 단속

제18조(안전사고 발생 시의 조치) ① 본교 내 도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와 목격자 등은 사상자 구호와 현장보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관련자, 신고자, 목격자 등은 사고발생 장소, 사상자의 수 및 부상정도, 재산 피해 사항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총괄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안전사고 접수 시 사고관련자 또는 신고자에게 [별지3] 등을 작성하도록 하고, 지체 없이 조사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와 소방서 등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19조(지도 단속) ① 총괄관리부서는 본교의 교통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단속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본교의 개인 이동장치 단속반원은 안전지도 단속 시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 규정 속도 준수 여부 등에 대하여 현장

시정 조치 할 수 있다.

제20조(위반 시 제재) ① 총괄관리부서는 본교 구성원인 운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징계 등의 신분상 불이익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총괄관리부서는 이 규정에 의한 운전자의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한 본교 구성원에게 제7조의 등록을 거절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본교 내에서의 운행을 금지 시킬 수 있다.

③ 총괄관리부서는 본교 구성원이 아닌 운전자가 이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 대해 본교 내 운행을 전면 금지시킬 수 있다.

부 칙<규정 제2043호, 2022.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교직원 ☐ 학생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 신청서

신청인 인적사항	※소속(학과)	※직급(학년)	※교번(학번)
	※성명	※휴대전화번호	

개인형 이동장치 종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제조업체명	※모델명	※일련 번호

안정 장비	의무	☐ 안전 헬멧
	권고	☐ 손목보호대 ☐ 무릎 보호대 ☐ 팔꿈치 보호대 ☐ 기타 보호장비 착용

■ 다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수집·이용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다음의 개인정보를 정기주차권 발급을 위해 동의합니다.

-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등록을 신청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동의)인 : (인)/서명

- 10 -

[별지 2호]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계획서 <2022.2.4>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계획서

※ 사항은 필수입력 정보입니다.

사업자 등록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업체명	※ 대표자
	※ 개업년월일	※ 사업장 소재지	※ 업태
	※ 연락처	※ 본점 소재지	※ 종목

운행 현황	※ 서비스지역	※ 서비스 시기	※ 이용 요금 - 기본료: - 분당 요금:
	※ 운행대수	※ 배치장소	※ 수거 빈도 및 방법

보험 보장 내역	※ 대인 한도액	※ 대물 한도액	※ 이용자 부주의 시 배상 여부	
			○	X

기타 사항	※ 본교에서 요청하는 경우 시간당 이동장치 데이터(API) 제공 동의 여부	
	○	X

- 붙임 1. 사업자 등록 사본(확인용) 1부.
2. 보험가입 현황 사본(확인용) 1부,

위와 같이 충남대학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규정에 의하여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계획서를 제출 합니다.

※
20 년 월 일
 신청(동의)인 : (인)/서명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보고서				
사고 일시			사고 장소	
운전자 인적사항	소속		학번	
	성명		연락처	
피해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신고자 (목격자) 인적사항	성명		연락처	
사고(피해) 발생 경위				
(6하원칙에 의거 서술식으로 작성)				
20 년 월 일 작성자 충남대학교총장 귀하 (인)/서명				